

증거 등 배척 신청서

사건번호: 2025제카1294

사건명 :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건

피 심 인 : (사) 대한산란계협회 회장 안두영

재목 : 국민일보 보도자료 등 배척 신청

1. 국민일보 보도기사 증거배제 신청

가. 신청 취지

본 사건 심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심사관 설명자료 23페이지) ‘산란계 농가의 수익성은 육계 및 돼지 농가 대비 약 3~10배 수준’의 내용과 국민일보 보도(2026.4월 17일) 기사는 실제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심인은 해당 자료의 증거 배제를 신청합니다.

나. 신청 이유

(1) 보도자료의 허위성 : 심사관이 제시한 보도자료상의 수익성 등은 국가데이터처(KOSIS)의 자료를 확인한다면 실현 불가능한 수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 협회나 산란계 생산자를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하여 공정위의 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로서 다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실제 진실인가’를 확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만약 공정위가 독자적인 물증 없이 오로지 부처의 홍보성 보도자료나 기사만을 근거로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채증법칙 위반(증거를 모으고 판단하는 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농식품부가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납니다. 한쪽 정부 부처(농식품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흘리고, 다른 부처(공정위)는 이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정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및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다) 공정위가 외부의 압력이나 타 부처의 여론몰이에 휘둘려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였다면 이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반 행정부처와 달리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준사법기관’입니다. 타 부처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 공식적인 발표자료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 자료에 대한 설명(특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통계를 산출한 방식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관성 등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투자액, 사육 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수치만을 비교(예 : E마트의 연간 수익은 100억이고, 동네 슈퍼마켓의 수익은 1억원인 경우, 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고 E마트가 동네 슈퍼마켓 보다 100배나 폭리를 취하고 있다)하는 것은 통계를 오남용하는 것이며, 특히 산란계 농가 연수익 3.8억은 통계를 단 한번만이라도 확인한다면, 불가능한 수치임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사실확인 없이 심판의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 산란계 농가당 연간 판매액(2024년)

연간 판매액	계	120만원 미만	120 ~1천만원	1천만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5억원	5억원 이상
농가수(개소)	17,682	2,670	8,976	4,735	673	321	305
비율(%)	100.0	15.1	50.8	26.8	3.8	1.8	1.7

* 출처 : 통계청 KOSIS(2024년 가축사육농가)

(마) 법적 분쟁의 개시

피심인인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사실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정식 청구(사건번호: [2026서울조정 1257,1258])하였습니다.(첨부 : 언론조정신청서 및 입증자료)

<참고> 언론중재 청구내용

사건번호	신청인	접수상황			처리내역			
		피신청인	청구명	접수일시	담당종재부	조정기일	처리결과	신청서조회
2026서울조정 1257-1258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인터넷 국민일보	경정보드, 손해배상	2026-05-04 14:21:22	서울계8종재부 (02-397-3053)			pdf출력

(바) 증거재판주의 위배

현재 법적 분쟁 중인 자료를 근거로 피심인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행정법상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됩니다. 만약 해당 증거로 처분이 내려진 후 정정보도 결정이 난다면, 이는 공정위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것입니다.

다. 요구사항

공정위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서 타 부처의 왜곡된 홍보 자료가 아닌, 검증된 물증에 근거해야 합니다. 국민일보 보도기사 등은 심사관이 관련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면 즉시 허구임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왜곡한 증거의 채택을 즉시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법적인 가상의 현실을 주장하는 수익률 자료 배제

가. 신청 취지

심사관은 고시가격의 적용기준은 생산자가 원란상태로 판매하는 가격임을 전제로하여 ‘생산비는 원란 생산비(선별포장비 제외)로 한정하여야 함’ (22페이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생산비용은 닭이 알을 낳기 까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계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10조의2, 제31조)에서 선별·세척·포장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원란 상태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설령, 원란 상태로 판매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축사에 들어가서 닭이 알을 낳은 직후에 원란 상태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란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만으로 생산자의 수익성을 따질 수는 없고, 생산자가 실제로 유통상인 등에게 판매(출하)할 때까지의 비용을 계산하여 수익성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계란 생산자는 선별·세척·포장하여 판매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GP(선별포장장)를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사람이 설치한 GP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란은 축사에서 수거하여 외부로 옮겨서 선별·세척·포장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동시 깨지는 비율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별포장업 허가까지 받아서 축사와 연결된 선별포장장(농장 GP)을 설치하거나, 또는 축사와 가까운 농장 외부에 선별포장장(유통GP)을 설치하여 선별·세척·포장까지 한 후 유통상인(수집 판매업자), 소매점, 가공업체, 직거래 등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운영하지 않고 선별포장업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희소합니다.

협회가 고시하는 가격은 법에 규정된 기준대로 준수하여 외부에 판매(출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선별·세척·살균·포장하지 않고 축사에 낳은 알을 그대로 ‘판매’ 하는 경우는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심사관은 선별·세척·살균·포장하는 단계는 유통단계라서 고시가격의 적용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단계를 외부에서 어떤 단계라고 명명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실질은 생산자(GP가 없는 생산자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GP에서 선별·세척·살균·포장한 후 판매)는 거의 대부분 선별·세척·살균·포장하여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나. 신청 이유

심사관이 제시한 증거처럼 생산자(본인)가 선별포장인(본인)에게 판매하는 것이라면, 계란 생산자는 대부분 본인이 본인에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은커녕 본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상업적 거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심사관이 주장하는 바대로 원란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 거래는 상업적 거래가 아니고, 위법적 거래이기 때문에 특별한 가상의 거래를 상정하여 판단해서는 아니됩니다.

다. 요구사항

공정위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서 가상의 현상(위법적인 사실)이 아닌 실질적인 사실이나 검증된 물증에 근거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실을 근거로 하여 수익성(소비자 피해)을 산출한 심사관의 주장과 자료는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1일

피심의인: 대한산란계협회 회장 안두영

